

	<h2 style="margin: 0;">물품구매업무 처리 규칙</h2>	규정번호	6-3-6
		제정일자	2007.02.14
		개정일자	2012.04.30
		개정번호	Ver.3 총페이지 3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의 물품구매, 제작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물품의 정의)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내, 외자로 도입하는 기자재, 비품 등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를 받는 사업참여자 및 협력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부서의 물품 구매행위에 적용한다.

제4조(구매부서) 모든 물품은 사무처 총무팀(이하 “구매부서”라 한다)에서 구매한다.

제5조(구매신청) 물품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각 부서 및 사업참여자는 별첨 내역서(연구비관리규정)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구매신청을 한다.

제6조(예산조정 및 도입심의) ① 사업계획서상에 기록된 기자재는 별도심의 없이 구매한다.

② 사업계획서상에 없는 기자재이거나, 기존 계획서를 변경해야할 경우에는 협력단 부단장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협력단 부단장은 필요시 산업기술연구소소장, 창업보육센터 소장 및 협력단 팀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7조(구매절차) 구매의뢰를 받은 구매부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1. 구매의뢰 접수
2. 시장조사
3. 가격결정 및 업체 선정
4. 계약서 작성 및 발주

제8조(구매방법) ①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·구매·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.

② 입찰을 요하는 금액이지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.

1.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획득한 제품
2. 외국산으로 대한민국에 단일 대리점을 획득한 업체의 제품
3. 기타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할 경우.

제9조(예정가격의 결정기준) ① 구매부서는 입찰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

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시중 거래 실패가격,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 실패가격
2. 실거래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
3.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, 유사한 거래 실패가격 또는 2인 이상의 견적가
 - ②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, 이행기간, 수급상황,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계약서 작성) ①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(국내물품)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서식에 의하여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계약서상의 계약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.

제11조(계약서 작성의 생략)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1.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
2. 전기, 가스, 수도의 공급 계약 등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

제12조(보증금)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,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금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시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④ 하자보수보증금은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,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- ⑤ 하자보수보증기간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수 후 2년으로 한다.

제13조(지체상금) ① 계약상 납품의무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1,000분의 1.5의 지체 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금액(이하 "지체상금"이라 한다)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납품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이미 납품한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에 의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
2.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

- 3. 계약상 납품의무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
- 4. 기타 본교의 승인이 있을 경우
 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납품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 - ⑤ 계약상 납품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제14조(수입물품의 통관)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업무는 구매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15조(분할지급) 구매부서는 계약금의 일부를 선집행하고자 할 때는 분할 지불 결재에 의하여 지급 할 수 있다.

제16조(기타)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동 법률 시행령 및 동 법률 시행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